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514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2. 20.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4/3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1. 3.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 2021. 3. 8. 접수 제8503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9.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049,31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0.부터 2019. 12. 1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2019차전456637호), 위 지급명령은 2019. 12. 27. 확정되었다.

나. C은 2021. 3. 2. 친동생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지분 4/3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접수 제8503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그 시가는 18,480,400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D은행, E은행, F은행, G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 재산을 시가보다 싸게 매각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 감소를 초래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또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해 구상금 채무 원금만 해도 1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던 C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시가인 18,480,400원보다 저렴한 1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초래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적정한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의 친동생인 점, 이 사건 계약의 매매대금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

판사 강문희

목 록

1. 서산시 임야 2579㎡
2. 서산시 임야 99㎡
3. 서산시 임야 198㎡
4. 서산시 전 860㎡. 끝.

